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186 무고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승환(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43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B가 던진 플라스틱 통에 맞아 상해를 입었음에도 B의 요구에 따



라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거짓 신고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6. 22.경 영천시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근무하던 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2023. 6. 초 김천에 있는 음식점에서 B가 안에 깨가 가득 든 1.6L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던져 피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통을 던지거나 피고인이 그 통에 맞아 다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



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허위의 사실로 경찰공무원에게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설명 들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2권 47쪽, 제3권 64, 69쪽), ②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을 당시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76쪽), ③ B는 피고인이 주방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고소취소 당시 진술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B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24. 6. 21. 22:30경 'D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영천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B가 2024. 4. 19. 위 모텔에서 라면국물을 머리에 붓고 얼굴과 몸을 때려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2024. 6. 21.에도 피고인의 떡살을 잡고 컵을 깨기에 추가적인 폭



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3, 24쪽).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모텔 영업 중 자리를 비우고 급히 경찰서로 온 것 이어서 돌아가야 한다'며 조사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는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6, 10, 11, 24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 야간에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경찰서에 찾아와 B를 신고하여야 할 정도로 B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 다음날 08:09경 이루어진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47, 49, 50쪽),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 B로부터 피해를 겪은 것이 있는가요, 피해 사실을 말해보세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고내용인 '2023. 6.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시락배달 음식점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던진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해사실'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3권 53, 54쪽). 앞서 피고인이 2024. 6. 21. B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은 위 고소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수사관의 추가적인 질문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가 종료된 후 2024. 7. 3. 영천경찰서에 연락하여 B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 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64, 68, 69쪽). 이후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다시 2024. 4. 19.자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취소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며, "B가 과거 범죄전



력 때문에 구속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반복해 무고죄의 책임을 저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B와 교제 중이었기에 그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2, 15쪽), 원심에서는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B에게 고소한 사실을 얘기하니 B가 상해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감옥에 갈 수 있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고, B가 아예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반복하여 피고인이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였다. 당시 연인관계였던 B에 대한 동정심과 B를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B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금전적 관계로 인하여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반복하면서 고소취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공판기록 75, 78쪽),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④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B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나 B의 부탁에 따라 고소취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고소취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4. 30.경에도 B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B의 부탁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권 18, 21, 26, 66쪽),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B의 부탁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B의 요구에 따라 진술을 반복하고 고소취소를 하였



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횟수가 다수인 점(공판기록 66쪽, 증거기록 제3권 66쪽), B는 2023. 8. 5. 피고인 및 그 아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중 아들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공판기록 66쪽, 증거기록 제3권 22, 32쪽), 2023. 11. 7.에는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23쪽), B는 원심법정에서 '2022. 10. 19.경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눈꺼풀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공판기록 68쪽), B는 수사기관에서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88, 89쪽) 등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및 그 자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㉕ B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신고하는 버릇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APO 이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2024. 2. 8.까지의 기간 동안 담당 경찰관의 주기적인 사후 관리와 질문에 대체로 자신의 주거 현황, B와의 관계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26~38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한 B의 폭력적인 행위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간대나 장소에서도 B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㉖ 위 APO 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18. 및 같은 해 8. 18. 'B와 금



전적인 문제가 얹혀있어 B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3권 31, 3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B의 요구에 응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㉞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인 2024. 7. 7. 경찰조사를 받았다. 만약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피고인이 꾸며낸 허위사실이었다면, 고소취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취소를 하면서도 "2024. 4. 19. B와 말다툼이 있었고, 2024. 6. 21. 누워있던 중 B가 찾아와 옷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우며, 유리컵을 주방 싱크대로 던져 깨졌고, 2023. 6. 초경 B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깨가 든 플라스틱 통'을 던져, 바닥에 흩뿌려진 깨를 청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권 73, 74, 76쪽), 고소 당시의 진술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는바, 당초의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B 또한 "2024. 4. 19. 벽지를 새로 도배해야 할 정도로 라면 국물이 벽지에 튀었고, 2024. 6. 21. 누워있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컵을 던져서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6~8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

 판사 김정도 _____

 판사 김성수 _____